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목적 :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 이용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한다.

(2) 이용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등급외자 대상자의 경우 초기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다. 동 지침 제20조 종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4. 계약서는 이용자(보호자)와 서면으로 2부 작성하며, 부분은 이용자(보호자)에게 교부한다.

5. 구비서류

센터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건강진단서(전염병 여부) 1매

(2) 의사소견서(보유질환 확인)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주·야간보호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매(해당자)

(6) 장기요양인증서,사본 1매,복지용구확인서 사본 1매

(7)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매

※ 진단서(건강진단서 및 치매유무진단서)는 검진일이 입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건강진단서는 전염성여부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연중 1회이상 재검진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등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비용은 장기요양급자의 경우 서비스이용 익월에 후납 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반,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3. 비급여항목인 식사재료비 (1회 4000원), 간식비(1회 500원)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4. 이용료는 매월 20일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5. 보호자 착오로 과 입금된 이용료는 보호자 통장에 입금시킨다.
6.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보험료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자부담	요양급여자 부담	① 월 요양급여액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 6%,7.5%,9%,(차등적용)
		식재료비	비용수납신고서에 의거함.
		간 식	비용수납신고서에 의거함.
		식재료 및 간식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 가능.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이용료	① 서울형데이케어운영지침에 의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 자체 이용료 기준에 의한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장기요양보험등급자와 같다.	

8. 요양보험 대상자 중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9.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 ⑤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⑥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⑥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⑦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⑧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⑨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3.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8.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이용자로부터 신체, 언어, 성적, 경제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때